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15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김종민 · 윤종오 · 허성무
이성윤 · 정일영 · 전종덕
어기구 · 김승원 · 김태선
문대림 · 정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며,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이하 “문화예술치유”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예술치유사”란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3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 제21조제1항 중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문화예술치유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치유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예술치유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치유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치유사는 문화예술치유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문화예술치유사의 등급, 문화예술치유 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치유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치유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제2호 중 “제27조의3제1항”을 “제27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예술교육

2. ~ 5. (생략)

<신설>

제6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11. (생략)

화예술교육을 말하며,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이하 "문화예술치유"라 한다.)를 포함한다.

2.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예술치유사"란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3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11.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③ (생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신설>

10. (생략)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
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
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10.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
업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

---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 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
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3(문화예술치유사) 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치유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치
유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
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
예술치유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치유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치유사는 문화예술치유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치유사의 등급, 문화예술치유 교육

제27조의3(자격취소) (생략)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
3. (생략)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치유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치유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의4(자격취소) (현행 제27조의3과 같음)

제34조(청문) -----

-----.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의4제1항-----
3. (현행과 같음)